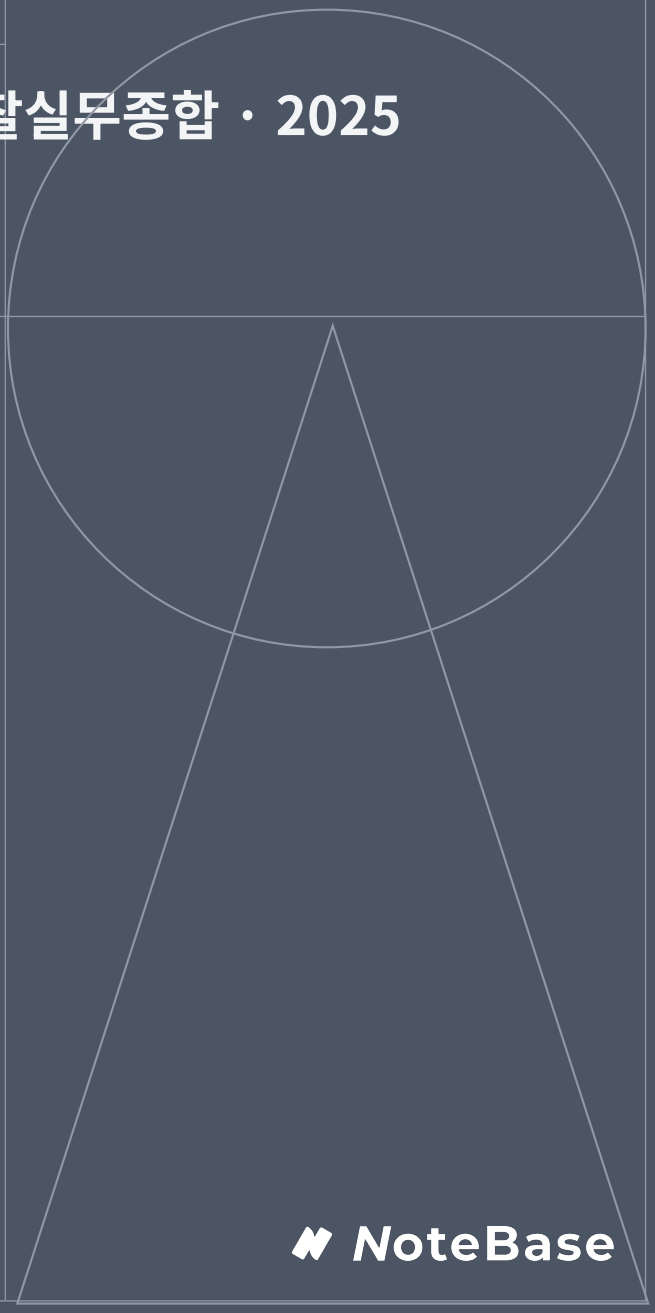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5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5

문 1. 경찰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통해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로 도출할 수 있다.

②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로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③ 구체적 위험이란 구체적 개별 사안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보호법익에 대한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추상적 위험이란 경찰의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4번

①

두 법률은 개별적인 경찰 임무와 직무를 열거하면서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경찰의 궁극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로 도출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②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의 보호**뿐 아니라 법질서와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기능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NoteBase

③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안의 실제 사정을 토대로 가까운 장래의 손해발생을 예측**하는 개념이다. 이미 손해가 발생했을 필요는 없지만, 막연히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상황에서 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존재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위험혐의**이다. 추상적 위험은 특정한 행위나 상태를 **일반적·추상적으로 보아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NoteBase

문 2. 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립성: 경찰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법집행에 대한 협조의 부족,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소외받게 되어 고립되는 특성을 갖는다.
㉡ 보수성: 경찰은 헌법을 수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유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조직성: 경찰은 사건·사고 발생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기동성과 협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능률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계급체계를 갖추고 제복을 착용한다.
㉣ 권력성: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해 법에 근거하여 일반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명령함으로써 시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경찰행정의 특수성은 경찰이 따라야 할 바람직한 원칙만을 뜻하지 않는다. 질서유지 임무에서 나타나는 **현상유지 성향**이나 시민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사회적 고립**도 설명하는 개념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고립성은 경찰이 시민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특성이다. 시민이 경찰을 존중하지 않거나 법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경찰업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경찰과 시민 사이의 유대가 약해져 **사회적 고립**이 생길 수 있다.

㉡ O: 보수성은 헌법질서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는 임무에서 비롯되는 **현상유지적 성향**이다. 경찰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과 질서의 유지를 중시하는 특성을 보인다.

㉢ O: 조직성은 긴급한 사건·사고에 여러 경찰관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특성이다. **기동성과 협동성을 확보**하려면 지휘·명령과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하므로 계급체계를 두고 제복을 착용하는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형태를 갖춘다.

㉣ O: 권력성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국민에게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이다. 시민의 동의를 얻어 협조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에 근거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설명은 4개이며,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조직에서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 분배, 경찰관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민주주의 의식 확립은 대내적 민주화 방안에 해당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을 통한 경찰활동의 공개는 대외적 민주화 방안에 해당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는 경찰의 기본이념 중 정치적 중립주의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경찰의 기본이념 중 경영주의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정답 3번

①

경찰조직 내부의 권한 배분과 구성원 관계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 대내적 민주화이다.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 분배, 경찰관의 민주적 리더십과 민주주의 의식 함양이 이에 해당한다.

②

경찰활동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감시·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과 국민의 관계를 민주화하는 대외적 민주화**에 해당한다.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목적조항은 **인권존중주의의 법적 근거**이다. 정치적 중립주의의 근거로 본 부분이 틀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④

경찰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 것은 효율성·능률성을 추구하는 경영주의의 법적 근거가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oteBase

문 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국경찰활동에 해당되는 전투는 무엇인가?

㉠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된 한국경찰 '화랑부대' 1개 소대(기관총 부대)가 뛰어난 전공을 거둠으로써 미 해병의 극찬을 받았다.
㉡ '화랑부대'는 미군으로부터 별도 정예훈련을 받고 부대단위로 편제된 경찰관 부대를 통칭하였다.
㉢ 미군으로부터 인정받은 전투력을 바탕으로 수색·정찰임무 및 전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① 장진호전투
② 다부동전투
③ 춘천내평전투
④ 함안전투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된 **화랑부대의 기관총 소대**가 활약하여 미 해병의 찬사를 받은 전투는 장진호전투이다.
미군의 별도 훈련을 받은 경찰부대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NoteBase

핵심 풀이

㉠의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된 화랑부대 기관총 소대**가 결정적인 단서이다. 장진호전투에서 이 경찰부대는 유담리 일대에서 기관총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여 미 해병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문의 1개 소대가 세운 전공은 이 활동을 가리킨다.

㉡의 '화랑부대'는 **미군의 별도 정예훈련을 받고 부대 단위로 편제된 경찰관 부대**를 통칭한다. 이 가운데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된 경찰부대가 장진호전투에 참가하였다.

㉢은 화랑부대가 인정받은 전투력을 바탕으로 미군과 수색·정찰 및 전투를 함께 수행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 기관총 전투부대와 ㉡의 정예훈련을 받은 경찰부대가 같은 활동 주체임을 뒷받침한다.

다부동전투와 함안전투는 경찰이 국군·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데 참여한 전투**이다. 경찰과 미군의 공동 참전은 여러 전투에 공통되므로, 이 문제에서는 화랑부대 기관총 소대의 구체적인 전공으로 전투를 구별한다.

춘천내평전투는 전쟁 초기 내평지서장 노종해 등이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켜 **국군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한 전투**이다.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된 화랑부대의 장진호 전투 활동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지문의 전투는 ① 장진호전투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4번

㉠
두 위원회 모두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oteBase

ㄴ

두 위원회 위원 모두 **중대한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ㄷ

두 위원회 모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적 이탈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oteBase

㉡

두 위원회 모두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의 재직자와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두 위원회 모두 경찰·국가정보원 직원·군인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소청 검사·직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도 같은 제한을 받으며, **2026년 10월 2일 당시 검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종전의 결격사유가 유지**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3.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 ·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3. 공소청 검사 ·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2015호, 2026. 9. 29.) 제2조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NoteBase

ⓑ

법관 자격자 2명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에만 적용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의 경력·전문성에 관한 자격요건이 있지만 법관 자격자 2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②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9.29>
1. 판사 · 검사 · 변호사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명이 비상임, 위원 1명이 상임**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이 상임, 위원 5명이 비상임**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NoteBase

문 6.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보 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 평정요소인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포상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답 4번

①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2005.5.13, 2016.12.30, 2024.12.10>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교육훈련 중 **질병·병역 복무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면직 또는 면직 제청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2005.5.13, 2016.12.30, 2024.12.10>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NoteBase

③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는 면직 또는 면직 제청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2005.5.13, 2016.12.30, 2024.12.10>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④

제2 평정요소는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이며, 그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면직 또는 면직 제청 사유이다. **포상 실적은 제1 평정요소**이므로 제2 평정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2005.5.13, 2016.12.30, 2024.12.10>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1. 제1 평정 요소
나. 포상 실적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NoteBase

문 7.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징계의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과실에 따른 의무위반이 **다른 법령의 처벌사유가 아니고 비난가능성도 없는 경우**,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②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의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③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 공적을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대상은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이다. 경정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NoteBase

④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공적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NoteBase

문 8.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14세미만의 사람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2번

①

14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임산부에게는 전자충격기와 전자방패의 사용이 금지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최루탄발사기로 발사할 때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한다. **15도 이상**은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해당 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NoteBase

④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때는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한 발사**가 금지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NoteBase

문 9.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4번

공통 해설

결산 절차는 다음 연도 기준으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2월 말까지) →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제출(4월 10일까지) → 감사원의 검사와 보고서 송부(5월 20일까지) → 정부의 국회 제출(5월 31일까지)** 순서로 진행한다.

국가재정법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NoteBase

문 10.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된다.

④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정답 2번

①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3조
② 1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이관 등 모든 과정에서 누설·유출을 막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다.

보안업무규정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 분류 · 취급 · 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4>

③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일절 해서는 안 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4조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지역은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개정 2020.1.14>

NoteBase

문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에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다.

정답 4번

①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대상 보도·청구 이유·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해당 보도를 계속 게시·매개 중이면 그 내용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NoteBase

③

청구된 정정보도에 **명백히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④

정정보도에는 사실을 바로잡는 진술, 이를 대표하는 제목과 필요한 설명·해명을 포함하지만, **위법한 내용은 제외해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NoteBase

문 12.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는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의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권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③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는 이미 이루어진 행정활동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후통제**이다. 경찰조직 밖의 국회가 행사하므로 외부통제에도 해당하지만, 사전통제로 분류한 부분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경찰통제는 통제 시점에 따라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로, 통제 주체가 경찰조직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나뉜다. 두 기준은 서로 독립적이다.

① O: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전에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는 정책·제도·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행정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② O: 대통령이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경찰조직 밖의 주체가 인사권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경찰통제에서 내부·외부를 나누는 기준은 **경찰조직의 안과 밖**이므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이유로 내부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X: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는 이미 이루어진 행정활동이나 국정의 특정 사안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책임을 요구하는 통제이다. 따라서 시점을 기준으로는 **사후통제**이며, 주체를 기준으로는 경찰조직 밖의 국회가 행사하는 외부통제이다. 선지의 '사전통제'를 '사후통제'로 고쳐야 한다.

④ O: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시정·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사후통제이다. 또한 감사원은 **경찰조직 밖의 기관**이므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정감사·조사권을 사전통제로 설명한 ③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13. 경찰활동에서 인권존중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 내용이 수사 절차에서의 청렴 의무위반·인권침해·부정청탁 등 「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1호의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경찰관서 감찰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③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수사경과자의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한다.

④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정답 4번

①

인권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이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위원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다. 선지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로 잘못 설명하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심의신청 사건이 수사 절차에서의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부정청탁 등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되면 수사심의계는 **경찰관서 감찰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반드시 이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⑧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 내용이 수사 절차에서의 청렴의무위반 · 인권침해 · 부정청탁 등 「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1호의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경찰관서 감찰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인권침해·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의무적 해제사유가 아니라 재량적 해제사유이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2.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NoteBase

④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① 경찰청장은 경찰관등(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서 같다)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경찰 인권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 3. 경찰 인권교육 실태조사 · 평가 4. 교육기관 및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5. 그 밖에 경찰관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NoteBase

문 14.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 제척·회피 및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②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 감찰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④ 감찰결과 처리 및 양정과 관련한 사항

정답 1번

①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감찰관 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감찰 규칙 4. 감찰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②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는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사항이다.

경찰 감찰 규칙 2.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

감찰결과의 공개는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사항이다.

경찰 감찰 규칙 3. 감찰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④

감찰결과의 처리 및 양정은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사항이다.

경찰 감찰 규칙 1. 감찰결과 처리 및 양정과 관련한 사항

NoteBase

문 15.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되는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정기회의에 3회 불참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답 1번

①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개선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 · 정책 · 관행의 개선

②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정기회의에 3회 불참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NoteBase

④

경찰 활동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각각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설치)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 · 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 · 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 · 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NoteBase

문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한정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정답 2번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NoteBase

③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NoteBase

문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 전문직업화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문가가 우월적 지식에 근거하여, 비전문가의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대신하려는 윤리적 문제점이다. 예컨대, 경찰관이 신고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형사법 지식만을 고려하며 신고된 사건의 해결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① 소외

② 부권주의

③ 차별

④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부권주의는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이 우월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판단을 배제하고 대신 결정**하는 것이다.
신고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 해결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개념 구분

부권주의: 전문지식의 우월성을 내세워 **상대방의 의사·판단을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지문의 경찰관은 형사법 지식을 활용하면서도 신고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결방법을 혼자 정했다. 전문지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의 판단을 배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소외: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매몰되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는 것**이다. 지문에 '형사법 지식만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제시된 정의와 사례의 중심은 다른 분야를 보지 못하는 데 있지 않고 신고자의 판단을 전문가의 판단으로 대신하는 데 있다.

차별: 전문직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 등이 경제적·교육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의 **직업 진입기회를 제한**하는 문제이다. 지문에는 경찰직에 진입할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전문지식과 지위에서 생기는 영향력을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지문에는 경찰관이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판단을 대신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제시문의 설명은 ② 부권주의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Dirty Harry 문제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으로 충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펠드버그(Feldberg)는 경찰관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작은 호의를 받는다고 해서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③ 델라트르(Delattre)는 경찰관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작은 호의를 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사회 형성재 이론은 주민의 작은 호의를 통하여 경찰관이 지역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Dirty Harry 문제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부당한 수단을 써도 되는가**라는 경찰윤리의 딜레마이다. 남의 비행에 참견하여 도덕적으로 충고하는 행동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Dirty Harry 문제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등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딜레마이다. 예를 들어 인질을 구하기 위해 용의자를 고문하는 경우처럼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부당성이 충돌하는 문제이며, 남의 비행에 참견하여 도덕적으로 충고하는 행동을 뜻하지 않는다.

② O: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가 반드시 큰 부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공짜 커피나 할인 같은 사소한 호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경찰관이 더 심각한 부패로 나아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③ O: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모두가 큰 부패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에게는 부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중시했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작은 호의의 수수를 금지하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④ O: 사회 형성재 이론은 주민이 베푸는 작은 호의가 **경찰과 주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호의를 감사와 친근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교류함으로써 경찰관과 지역주민 사이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면책”에 관한 정의이다. 밑줄 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징계 또는 문책 요구’가 포함된다.
② ‘시정 요구’가 포함된다.
③ ‘경고·주의 요구’가 포함된다.
④ ‘개선 요구’가 포함된다.

정답 4번

①
징계 또는 문책 요구는 적극행정 면책으로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가.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경찰청 감사 규칙 1.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②
시정 요구는 적극행정 면책으로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가.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경찰청 감사 규칙 2. 시정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 회수 · 환급 ·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고·주의 요구는 적극행정 면책으로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가.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경찰청 감사 규칙 3. 경고 · 주의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NoteBase

④

개선 요구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이지만, **적극행정 면책 대상 책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가.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경찰청 감사 규칙 4.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 ·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NoteBase

문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보다 쉽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POP)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① 쓰레기통 모델
② SARA 모델
③ 사이버네틱스 모델
④ 점증 모델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에크와 스펠만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제시한 모형은 SARA 모델이다. **문제 탐색·분석·대응·평가**를 통해 지역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효과를 확인한다.

핵심 풀이

SARA 모델은 에크와 스펠만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을 실제 문제해결 과정으로 구체화한 모형이다. 개별 사건의 처리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지역문제를 찾아 원인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한다. 문제 탐색(Scanning)은 해결할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분석(Analysis)은 원인과 관련 조건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대응(Response)에서는 분석에 근거한 해결책을 선택·실행하며, 평가(Assessment)에서는 실행 여부와 문제 감소 효과를 확인한다. 이 네 단계의 머리글자를 합친 이름이 SARA이다.

쓰레기통 모델은 목표가 모호하고 참여가 유동적인 조직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지역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효과를 평가하도록 안내하는 SARA 모델과 구별된다.

사이버네틱스 모델은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기보다 제한된 정보와 **환류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환류를 활용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이를 에크와 스펠만의 POP 문제해결 모형으로 볼 수는 없다.

점증 모델은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차이가 작은 대안들을 비교하여 조금씩 수정**하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기존 정책에서 얼마나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두며, POP의 네 단계 문제해결 절차를 가리키는 명칭은 아니다.

따라서 지문의 설명에 해당하는 모형은 ② SARA 모델이다.

NoteBase

문 2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 및 관련 기록·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청장등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 출동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출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경찰청장등은 출동 현장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촬영 사실을 사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출동 현장을 촬영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

경찰청장등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실시간 현장 확인·지휘를 위해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 · 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 · 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NoteBase

ㄴ

출동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소리·안내판·안내서면·안내방송 등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 ·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출동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출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ㄷ

현장에서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우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을 미리 공지하여 알릴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사후 공지할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 · 관리)
③ 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을 미리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ㄹ

수집된 영상정보는 **촬영일부터 30일간 보관**하며, 범죄 수사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 ·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oteBase

문 2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20세 미만인 사람(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정답 4번

①

20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한체육회장 또는 시·도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나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연령에 따른 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NoteBase

②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뇌전증 등으로 **총포·도검 등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선지처럼 총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2. 심신상실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5.12.16>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난 날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oteBase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 · 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5.1.7>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제3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삭제 <2025.1.7>
나. 삭제 <2025.1.7>
다. 삭제 <2025.1.7>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oteBase

문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NoteBase

①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약식명령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갈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 ·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 · 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 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 · 제13조의 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0, 2024.1.16>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NoteBase

②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0, 2024.1.16>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할 때 **범죄경력자료도 함께 송달**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 · 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NoteBase

④

사진 촬영을 위한 출석기한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가 아니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NoteBase

문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라는 기한은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기한**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후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기면,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NoteBase

문 2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각하) 결정한다.
㉡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
고소·고발로 수리한 동일 사건에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이 명백하면 각하**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5.24, 2026.10.2>
4. 각하: 고소 · 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는 **각하가 아니라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이다.

경찰수사규칙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

보완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쳐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05조(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6.10.2>

㉤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하면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NoteBase

문 26. 「경찰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상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송치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압수물 폐기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과 유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치 금품은 별도로 지정된 보관담당자로 하여금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환부·가환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②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한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 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NoteBase

③

압수물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폐기 규정이 없으면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한다. 폐기 시에는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압수물의 폐기) 「경찰수사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른 폐기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폐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68조(압수물 폐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현금·귀금속 등 중요금품과 유치인의 임치 금품은 별도로 지정된 보관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견고한 상자나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은 일반 압수물의 보관 방법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② 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과 유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치 금품은 별도로 지정된 보관담당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27. 「경찰수사규칙」 및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상 입건 전 조사 및 불입건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법경찰관이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법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관서의 소속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조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적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 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은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려면 **그 사건을 수리하고 소속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건 수리를 생략할 수 없다.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2024.5.24>

㉡
입건 전 조사는 **임의적인 방법이 원칙**이다. 대물적 강제조치를 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③ 조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적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NoteBase

㉢

다수 관계인의 조사, 자료의 추가 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 등 **계속 조사할 필요가 소명되면** 수사부서의 장은 **6개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②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 · 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진정인·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에 대한 위해나 불이익 우려 등 통지로 인한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1.4>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 · 신체 · 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 · 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oteBase

문 28. 「범죄수사규칙」상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③ 기피 신청을 하려는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관서 내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건 담당 경찰관이 회피 신청을 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이 그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3, 4번

①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④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NoteBase

③

기피신청서는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속 수사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아니라 감사부서의 장에게서 신청 사실을 통보받는 기관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① 제9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지체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고, 3일 이내에 공문으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피 신청을 받은 소속 경찰관서장은 **사건 이송, 3일 이내 담당 경찰관 재지정, 요건을 갖추어 상급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계속 수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회피를 허가한 경우 반드시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③ 소속 경찰관서장은 회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상급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지정된 경찰관서로 사건 이송. 이 경우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 긴급한 현장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이송하기 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 재지정 3.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및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 ·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상급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수사

NoteBase

문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음이 포함된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가해자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 제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②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해진 녹화 절차를 지킨 영상물로서 피의자·피고인·변호인에게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증거보전기일의 신문은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충분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 · 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마치면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NoteBase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도착 시각, 녹화 시작·종료 시각 및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서나 별도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NoteBase

문 3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을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한 때에는 사후에 관련 서면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④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에게 보복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범죄신고자등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도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 · 검사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NoteBase

③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신청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 구두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②재판장 또는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1. 다음에서 설명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알약의 모양이 나비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성 식욕억제제의 성분이다.
㉡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식욕을 사라지게 하여 체중감량의 효과가 있다.
㉢ 다량을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하면 환청, 환각, 망상, 중독 등의 부작용이 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① 옥시코돈(Oxycodone)
② 코데인(Codeine)
③ 펜터민(Phentermine)
④ 해시시(Hashish)

정답 3번

②

코데인은 **마약으로 분류되는 성분**이므로 지문에서 설명하는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https://drive.google.com/file/d/1Opher7X9SRp50aCc3vWk6VktgDSuIwQT/view?usp=drivesdk

③

펜터민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의 성분**으로,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LiSxpBGLQts_gO20TWDvx5EohC5-Ry1E/view?usp=drivesdk

NoteBase

문 3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 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사실을 접수한 때에 한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한다.

③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받도록 조치**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②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지원제도와 유관 기관·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③ 경찰관은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 ·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한다.

NoteBase

③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참여가 가능함을 고지**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하여는 「경찰수사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살인 · 강도 ·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 비노출을 요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하여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보호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보호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④

피해자의 심각한 불안감 등으로 대질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하여는 「경찰수사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살인 · 강도 ·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 비노출을 요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하여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보호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보호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NoteBase

문 33. 다음에서 설명하는 다중범죄의 정책적 해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 강화로 사전에 불만·분쟁 요인을 찾아 해소시키는 방법이다.

① 선수승화법
② 경쟁행위법
③ 지연정화법
④ 전이법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특정 불만집단의 사정을 미리 파악하여 **불만·분쟁의 원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은 선수승화법이다.

개념 구분

선수승화법은 정보활동을 통해 특정 불만집단의 요구와 분쟁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해소하는 방법이다. 제시문의 '정보활동 강화'와 **'사전에 불만·분쟁 요인을 찾아 해소'**가 이 개념에 해당한다.

경쟁행위법은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부각**하여 그 집단이 위축되고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불만의 원인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것과 구별된다.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두어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불만집단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를 갖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이법은 큰 사건이나 대규모 행사 등을 통해 **관심을 다른 대상으로 돌리는** 방법이다. 기존 쟁점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에 해당하는 정책적 해결법은 ① 선수승화법이다.

NoteBase

문 34.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봉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소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에게 경찰봉을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로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다.

② 경찰관은 '폭력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의 신체를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급적 대상자의 머리, 얼굴, 목, 흉부, 복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③ 현행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경찰관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경찰봉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을 사용한 경우 신속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경찰봉을 격리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소극적 저항 이상인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하여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3장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3.5. 경찰봉 사용
3.5.2. 경찰봉 사용 한계
가. 격리도구로서의 경찰봉 사용
경찰관은 '소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에게 경찰봉을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로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다.

NoteBase

②

폭력적 저항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하는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머리·얼굴·목·흉부·복부 등 중요 부위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3장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3.5. 경찰봉 사용
3.5.2. 경찰봉 사용 한계
나. 중위험 물리력으로서의 경찰봉 사용
1) 경찰관은 '폭력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의 신체를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상자의 머리, 얼굴, 목, 흉부, 복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③

도주자를 체포하려고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때는 **가급적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해야 한다.** 중요 부위·급소 가격은 **다른 모든 경찰 물리력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되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최후 수단**이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3장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3.5. 경찰봉 사용
3.5.2. 경찰봉 사용 한계
나. 중위험 물리력으로서의 경찰봉 사용
2) 경찰관은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서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3장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3.5. 경찰봉 사용
3.5.2. 경찰봉 사용 한계
다.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경찰봉 사용
1) 경찰봉 이외의 여타 모든 경찰 물리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찰관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경찰봉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NoteBase

④

경찰봉을 **중위험 물리력 이상으로 사용하면 신속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
4.2. 사용보고
4.2.1. 경찰관이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신속히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경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한다)
② 임신부로 그 해의 을지연습 또는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훈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정년 퇴직일 기준 잔여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④ 건강상태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정답 3번

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찰관은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만 면제 대상**이 된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호 나목 전단에 따라 을지연습 또는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건강상태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임신부로서 **그 해의 을지연습 또는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훈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의2(비상근무의 면제)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찰관등을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2.「비상대비훈련예규」 제7장제2절제1호나목 전단에 따라 을지연습 또는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비상대비훈련예규
제7장 행정사항
제2절 근무 및 복장
1. 근무
나. 임신부인 경우 해당기관의 「을지연습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자체 판단하여 그 해의 연습에서(공무원비상소집훈련 포함) 제외 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0⊠83개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한다)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인사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비상소집 훈련 종료 후 개인별 전시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준용한다.

NoteBase

③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제 사유는 육아시간 사용 가능, 을지연습 등의 제외 대상 해당, 건강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근무 불가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의2(비상근무의 면제)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찰관등을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한다. 2.「비상대비훈련예규」 제7장제2절제1호 나목 전단에 따라 을지연습 또는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건강상태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④

건강상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발령권자가 인정하면**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3. 건강상태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NoteBase

문 36.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경우

④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3번

NoteBase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을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치가 이미 설치·등록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별도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①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2018.3.27, 2018.12.24, 2020.6.9, 2020.12.22, 2021.1.12, 2023.10.24, 2024.2.13, 2024.3.19, 2024.12.3, 2025.4.1>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 · 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 · 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 · 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 · 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NoteBase

②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①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2018.3.27, 2018.12.24, 2020.6.9, 2020.12.22, 2021.1.12, 2023.10.24, 2024.2.13, 2024.3.19, 2024.12.3, 2025.4.1>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③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위반 자체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0.5.26, 2023.10.24>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NoteBase

④

장치가 해체·조작 등으로 **효용이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정비, 폐차,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연구 등의 사유나 부착기간 경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①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2018.3.27, 2018.12.24, 2020.6.9, 2020.12.22, 2021.1.12, 2023.10.24, 2024.2.13, 2024.3.19, 2024.12.3, 2025.4.1>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 ·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 ·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NoteBase

문 37.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65세 이상 운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에 해당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의 최초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④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제87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3번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 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7.10.24, 2020.12.22>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NoteBase

②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는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이며, 이 교육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별개**이다. 75세 이상 신규 면허취득자는 학과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제93조제1항제1호 · 제5호 · 제5호의2 · 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 · 제5호 · 제5호의2 · 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https://drive.google.com/file/d/1VHfHC7ikhuJlkLqxw6U2UHGmteNbEIYw/view?usp=drivesdk

NoteBase

③

합격일에 75세 이상이면 최초 갱신기간은 합격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이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그날 이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3.27, 2020.12.22, 2025.8.14>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도로교통법 부칙(2025. 8. 14. 법률 제21016호) 제2조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④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그 갱신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NoteBase

문 38. 정보보고서에서 판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① 우려 → 전망 → 예상 → 판단

② 우려 → 예상 → 전망 → 판단

③ 판단 → 예상 → 전망 → 우려

④ 예상 → 판단 → 전망 → 우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전망'은 장기적인 윤곽을 예측하는 표현이고, '예상'은 단기적인 상황 전개가 **비교적 확실함**을 나타내므로 '전망'보다 가능성이 높다. '우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비하는 수준이고, '판단'은 **거의 확실한 수준**이다.

올바른 순서

우려 → 전망 → 예상 → 판단

우려: 뚜렷한 징후는 없지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할 때 쓰는 표현이다. 제시된 네 용어 중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가장 낮다.

전망: **장기적인 활동의 윤곽**을 내다볼 때 쓰는 표현이다. 단순히 가능성에 대비하는 '우려'보다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비교적 확실한 상황 전개를 나타내는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예상: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비교적 확실할 때** 쓰는 표현이다. 장기적인 윤곽을 예측하는 '전망'보다 확실성이 높지만, '판단'처럼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

판단: 일정한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할 때** 쓰는 표현이다. 제시된 네 용어 중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가장 높으므로 마지막에 놓인다.

NoteBase

문 39. 안보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찰의 경우 1차적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안보경찰은 1차적 목표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다.

② 안보경찰활동은 사후·진압적 성격을 갖는다.

③ 안보경찰활동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④ 안보경찰의 수단상 특징은 비공개성과 비노출성이다.

정답 2번

①

일반경찰의 1차적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고, 안보경찰의 1차적 목표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가안전보장**이다.

②

안보경찰활동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기본으로 한다.

③

두 법률은 경찰의 임무와 직무 범위에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포함하므로 안보경찰활동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

④

활동 내용이나 담당자의 신분이 드러나면 안보 위해세력의 대응으로 업무가 방해될 수 있으므로, **업무의 비공개성과 신분의 비노출성**이 수단상 특징이다.

NoteBase

문 40.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요청기관의 장은 **기존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2021.3.16, 2026.8.4>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NoteBase